열공급규정 개정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 19 (생략)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착공예정일 또는 동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착공예정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신고한 착공예정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착공일을 말합니다.	제5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습니다. 1. ~ 19. (현행과 같음) 20. “착공일”이라 함은 건축법 제2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 허가권자로부터 발급받은 착공신고필증 발급일을 말합니다. 다만, 사용자가 착공신고필증 발급일과 실제착공일이 차이가 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실제 착공일을 말합니다.**

현 행	개 정
제6조(열사용신청) ① ~ ② (생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명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명의 -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명의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필요한 경우 위·수탁자 공동명의)	제6조(열사용신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명의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1. 공동주택 가. 신축공동주택의 경우 : **주택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의 명의 -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주체와 동일시 할 수 있는 자 - 사업주체가 다수인 경우에는 공동명의 또는 대표자 명의 -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와 사업시공자 공동명의 - 신탁법에 의한 수탁자가 사업주체가 될 경우에는 위탁자 명의(필요한 경우 위·수탁자 공동명의)

현 행	개 정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1) 주택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2)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주택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명의 2. 건물 (생략) ④ ~ ⑦ (생략)	나. 기존공동주택의 경우 (1)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의 임대사업자**를 말합니다)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 (2) 열요금 납부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서면상 보증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리업자의 단독명의 2. 건물 (현행과 같음) ④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등) ①제6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명의로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제6조제2항 단서의 경우를 포함합니다)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② ~ ③ (생략)	제11조(관리업무 인계통지 등) ①제6조제3항 제1호에 의한 사업주체(이에 준하는 자의 명의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조에서 같습니다)의 명의로 열수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한 경우에는 인계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사업자에게 통지(별지 제8호 서식)하여야 합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 ⑤ (생략)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신청에 의한 열수급계약의 해제 등) ①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새로운 사용자는 명의를 변경하여 열을 계속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용자는 사업자에 대한 열사용과 관련된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배관의 철거여부 및 철거시기 등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제17조의 2(대체 열공급 요청 등) ①사업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사업자”라 한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한다)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 ③ (생략)	제17조의 2(대체 열공급 요청 등) ①사업자가 경영상의 긴박한 사유 등으로 인해 사용자에 대한 정상적인 열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열공급이 가능한 타 사업자**(이하 “대체사업자”라 합니다)를 통한 열공급(이하 “대체 열공급”이라 합니다)**을 요청해야 합니다.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공급조건) ①사용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2 (생략) ② (생략)	제18조(공급조건) ①**사업자가** 공급하는 열매체의 온도와 압력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 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19조(공급개시 등) ① ~ ④ (생략) ⑤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이 되는 날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일 이전까지	제19조(공급개시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는 기본요금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부담하며, 최초로 도래하는 요금 부과시 상계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행정기관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열공급개시예정일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까지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하지 못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의 5일 이전 일로부터 열공급개시 전일 까지** 2.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5일 이전에 열공급을 개시하지 못하는 사유를 통지한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 전일 까지**

현 행	개 정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 6 (생략)	제23조(사용자의 책임으로 인한 공급정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후에 정지사유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고 사업자로부터 그 사유의 해소를 요청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자로부터 **시정요청을 받은 후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용자에 대하여** 열의 공급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자는 정지하는 날의 5일전까지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최대감면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감면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열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시간이란 연속하여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1. 온수 가. ~ 나. (생략) 다. 동절기(12, 1, 2월) 및 환절기(11월,3월)를 제외한 기간에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2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 라. (생략) 마. 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였으나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종료예정시간 초과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 부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제26조(공급중지 등으로 인한 요금감면) ①사업자가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대한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단, 최대감면 한도는 월 기본요금 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감면방법은 다음 각호에 따릅니다(열공급중지 및 사용제한 시간이란 연속하여 중지되거나 제한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1. 온수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동절기(12, 1, 2월) 및 환절기(11월,3월)를 제외한 기간에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2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삭 제>**

현 행	개 정
2. 냉수 가. (생략) 나. 고이용율 냉수사용자 이외의 냉수사용자가 냉방시기(5, 6, 7, 8, 9월) 9시부터 18시 사이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신설)	2. 냉수 가. (현행과 같음) 나. 고이용율 냉수사용자 이외의 냉수사용자가 냉방시기(5, 6, 7, 8, 9월) 9시부터 18시 사이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6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다. 고이용율 냉수사용자 이외의 냉수사용자가 나목의 냉방시기를 제외한 기간에 열공급이 중지되거나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의 시작시간부터 12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하고, 12시간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② ~ ③ (생략) ④사업자가 사용자 전체기계실 중 일부 기계실에만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면합니다. 감면요금 = [(공급중지된 기계실에서 공급되는 계약면적(계약용량)×기본요금단가)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일수 ÷ 해당월의 일수)]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사업자가 사용자 전체기계실 중 일부 기계실에만 열공급을 중지하거나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는 기본요금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여 감면합니다. 감면요금 = [(공급중지된 기계실에서 공급되는 계약면적(계약용량)×기본요금단가) × (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일수 ÷ 해당월의 일수)]

현 행	개 정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중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가 확인하고 다음과 같이 기본요금을 감면합니다. 1.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는 전일까지의 해당일수에 대해 기본요금 전액 감면.	<삭 제>
⑥ (신설)	⑥사업자가 제25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였으나 통보한 열공급중지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열공급중지 또는 사용제한 종료예정시간 초과 6시간마다 기본요금 1일분을 감면합니다.(초과시간은 사전에 약속된 열공급중지 종료시간 후 부터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단밸브를 다시 개방한 시간 전까지를 의미합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영기준) ① (생략) ②제1항제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제32조(열사용시설의 운영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사용자는 제1항제4호의 수질기준에 따라 연간 1회이상 환경분야시험·검사등에관한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측정대행업체의 수질검사를 시행한 후 수질시험성적서를 기계실에 비치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제35조(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사용자가 법 제18조에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약종별 부과단위에 해당 부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 부과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중 부과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계약면적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단, 열이 공급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추가되는 면적은 조정하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 2. (생략) ③ ~ ⑥ (생략)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율 또는 상승률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최근의 조정율 또는 상승률에 의합니다. 1. 신축주택용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임대주택법시행규칙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조정율의 평균비율	제35조(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 등) ①**사업자가** 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여야 할 공사비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별표2와 같으며, 계약종별 부과단위에 해당 부과단가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9조제3항에 따라 계약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각각의 계약종별 부과기준으로 계산된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기준중 부과단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1. 계약면적 (각 세대의 전용면적의 합계) + (전용면적 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 단, 열이 공급되지 않거나 열공급이 추가되는 면적은 조정하며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정산합니다.** 2.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비율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산정합니다. 다만, 조정율 또는 상승률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 3년을 기준으로 최근의 조정율 또는 상승률에 의합니다. 1. 신축주택용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시행령**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한 표준건축비 조정율의 평균비율

현 행	개 정
2. 기존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및 기타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비율	2. 기존주택용, 업무용, 공공용 및 기타의 경우 : 조정시점으로부터 과거 3년동안에 한국은행이 발표한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의 평균비율
⑧ ~ ⑩ (생략)	⑧ ~ ⑩ (현행과 같음)
제36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① ~ ③ (생략)	제36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사비부담금은 현금(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합니다)으로 납부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납부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자가 부담합니다.	④공사비부담금은 현금(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합니다)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하여야합니다. 이 경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납부로 발생되는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하며, 사용자가 공사비부담금을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로 납부 할 경우 사업자에게 열 사용신청서와 함께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이하 “아파트형공장”이라 합니다)을 건축하는 사용자가 현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⑤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지식산업센터**(이하 **“지식산업센터”라 합니다)를** 건축하는 사용자가 현금에 준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사업자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제4항 이외의 방법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제37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①공고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7항의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에 동 규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금 납부비율(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에 청약금 비율을 합산합니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생략)	제37조(공사비부담금의 납부일 등) ①공고지역에서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용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 규정**에 따라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공개모집하는 공동주택(임대주택은 제외합니다)의 경우에는 총공사비부담금에 **동 규칙 제60조의 규정**에 따른 입주금 납부비율(청약금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 비율에 청약금 비율을 합산합니다)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입주자의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 나. 중도금 : 입주자의 분할시기별 중도금 납부일로부터 7일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② ~ ③ (생략) ④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계약금 : 변경계약일 또는 재사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⑤ ~ ⑨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증설사용, 변경사용 또는 재사용의 경우에는 20%를 계약금으로, 40%를 중도금으로, 40%를 잔금으로 분할하여 다음 각목의 기한내에서 사업자가 정한 납부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건축에 의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재사용의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가. 계약금 : 변경계약일 또는 재사용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나. 중도금 : 계약금 납부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까지의 기간을 2등분하여 사업자가 지정하는 날 이내 다. 잔금 : 열공급개시일 이내 ⑤ ~ ⑨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42조(공사비부담금의 정산 등) ①사용자는 제2항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확정을 위하여 최종 설계도서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이 공급되는 세대발코니 합계면적을 계산한 최종 서류는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42조(공사비부담금의 정산 등) ①사용자는 제2항의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의 확정을 위하여 최종 설계도서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이 공급되는 **세대발코니 합계면적을 계산한 최종 서류는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에** 각각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하며, 열공급개시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과 열부하는 증설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② 사업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하며, 열공급개시 이후 사용자의 요청에 의하여 증가되는 면적과 열부하는 증설 사용으로 처리합니다.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가. (생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발코니면적 :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나. 발코니면적 :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③ ~ ⑧ (생략)	③ ~ ⑧ (현행과 같음)
⑨사업자는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을 착공예정 90일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 합니다.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 당시 착공예정일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⑨사업자는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90일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 통보 합니다.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 당시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을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⑩사용자측의 발코니 계약면적 산출근거 서류 제출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⑩**사용자는** 발코니 계약면적 산출근거 서류 제출시 건축물현황도 작성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합니다.

현 행	개 정
제45조(요금의 계산) ① ~ ② (생략) ③아파트형공장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난방용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냉방용 ④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열량계가 분리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 전체 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기본요금 :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전액감면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공공용 냉방용 ⑤ ~ ⑥ (생략)	제45조(요금의 계산)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지식산업센터는**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난방용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업무용 냉방용 ④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합니다)에 부속된 주거용시설(열교환설비 및 열량계가 분리설치된 경우에 한합니다)이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을 경우 요금의 적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1. 기본요금 : 제46조제1항제6호에 의거 전액감면 2. 난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주택용 난방용 3. 냉방사용요금 : 별표3 온수 공공용 냉방용 ⑤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46조(요금의 감면) ①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 2 (생략) 3.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4. ~ 7 (생략) 8. 임대주택법 제16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임대주택중 전용면적 60㎡ 이하의 영구임대·50년임대 및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 최초 입주일로부터 기본요금 전액 감면	제46조(요금의 감면) ①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사용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용자의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은 제외합니다)의 경우 : 기본요금의 100분의 30범위 내에서 감면 4. ~ 7 (현행과 같음) 8.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에 의한 사업주체가 3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의 경우 : 최초 입주일로부터 기본요금 전액 감면**

<table>
<tr><th>현 행</th><th>개 정</th></tr>
<tr><td>9. 제8호에 의한 주택이외의 주택용 사용자단지에 거주하는 개별세대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
가. ~ 라 (생략)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바. ~ 아 (생략)
[표]
<table><tr><th>감면대상유형</th><th>월 감면액(부가세포함)</th></tr><tr><td>마목</td><td>10,000원</td></tr><tr><td>아목</td><td>7,000원</td></tr><tr><td>가・나・다・라목</td><td>5,000원</td></tr><tr><td>바·사목</td><td>4,000원</td></tr></table></td><td>9. 제8호에 의한 주택 이외의 주택용 사용자 단지에 거주하는 개별세대 중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아래표에 명시된 감면대상유형별 해당금액 감면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생계급여), 제2호(주거급여), 제3호(의료급여), 제4호(교육급여) 수급자
바. ~ 아 (현행과 같음)
[표]
<table><tr><th>감면대상유형</th><th>월 감면액(부가세포함)</th></tr><tr><td>마목 (생계급여, 의료급여)</td><td>10,000원</td></tr><tr><td>가·나·다·라·마(주거급여, 교육급여)·아목</td><td>5,000원</td></tr><tr><td>바·사목</td><td>4,000원</td></tr></table></td></tr>
</table>

현 행	개 정
10. 주택법시행령 제2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	10. **주택법시행령 제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의 경우 : 주거용으로 확인된 호실에 대해 해당 오피스텔 평균사용량 기준으로 계산한 난방용 사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냉방용 사용요금 감면제외)
11. (신설)	1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의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용자중 기계실(열사용시설) 멸실·파손·침수로 인하여 열사용을 하지 못할 경우 : 사업자가 확인 후 열공급을 받지 못하는 날로부터 열공급을 재개하는 전일까지에 해당하는 기본요금 전액 감면**
② ~ ④ (생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⑤ 제1항제10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감면금액은 오피스텔용 총 난방 사용량 × 업무용 요금단가 × 주거용 비율 × 20%로 합니다. 2.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사무 및 주거 공간(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제외)으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사용한 열량을 말합니다. 3.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은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침량을 적용하며,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난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오피스텔용 난방사용량 = (오피스텔용 난방면적 ÷ 전체 난방면적) × 총사용량 4. 주거용 비율 = 주민등록 전입 호실 수(數) ÷ 전체 오피스텔용의 호실수이며, 주민등록 전입호실 수는 전입호실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계산합니다. 5. 주거용 비율 계산시 백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림합니다. 6. 주거용 비율은 반기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이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4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월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⑤ 제1항제10호에 의한 요금감면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계산합니다. 1. 감면금액은 **오피스텔 총 난방사용량 × 업무용 요금단가 × 주거용 비율 × 20%**로 합니다. 2. **오피스텔 총 난방 사용량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에서 정한 사무 및 주거 공간(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등은 제외)으로 이용되는 시설에서 사용한 열량을 말합니다. 3. **오피스텔** 난방사용량은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검침량을 적용하며, 계량기가 구분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아래의 산식에 의한 난방면적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오피스텔** 난방사용량 = (**오피스텔** 난방면적 ÷ 전체 난방면적) × 총사용량 4. 주거용 비율 = 주민등록 전입 호실 수(數) ÷ 전체 **오피스텔**의 호실수이며, 주민등록 전입호실 수는 전입호실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사업자에게 제출한 거주자 주민등록 등(초)본에 의해 계산합니다. 5. 주거용 비율 계산시 백분율의 소수점 이하는 1로 올림합니다. 6. 주거용 비율은 반기별로 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용자가 신청일이 속한 월의 이전월 말일 기준으로 제4호에 의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조정을 신청할 경우에는 월별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55조(수요관리형요금제도) ① ~ ③ (생략) ④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아파트형공장과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 제1호의 계절별차등요금제는 냉방용 사용요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5조(수요관리형요금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제3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온수를 열매체로 공급받는 **지식산업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의 주거용부분에 대해서는 계절별 차등요금제도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⑤제3항 제1호의 계절별차등요금제는 냉방용 사용요금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56조(검침일 등) ① ~ ④ (생략)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와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할 경우에 있어서의 첨두부하시간(별표 3)의 경우에는 매일 원격검침을 합니다. ⑥ ~ ⑩ (생략)	제56조(검침일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도가 적용되는 경우와 냉수를 열매체로 공급할 경우에 있어서의 첨두부하시간(별표 3)의 경우에는 **매시간 원격검침을 합니다.** ⑥ ~ 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0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열사용량의 계량) ① 계량기·원격검침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량기의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에 의할 경우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할 경우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3. 사용설비와 사용기간에 의하는 경우 : 사용설비용량(kcal/h) × 1일사용시간 × 대상일수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에 의하는 경우 : 계약면적(㎡) × 단위난방면적당 연간열소비량(Gcal/㎡) × 해당월의 소비비율 × (대상일수 ÷ 월력에 의한 해당월의 일수)	제60조(계량기 고장 등의 경우에 있어서의 열사용량의 계량) ① 계량기·원격검침설비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열사용량을 정확하게 계량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중에서 사업자가 선정하여 열사용량을 산정합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계량기의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가 10일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1.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적에 의할 경우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량 ÷ 전월 또는 전년동월의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2. 계량기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실적에 의할 경우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량 ÷ 교환 또는 수리전후의 계량기에 의한 실사용일수) × 대상일수 3. 사용설비와 사용기간에 의하는 경우 : 사용설비용량(kcal/h) × 1일사용시간 × 대상일수 4. **단위면적당 열소비량에 의하는 경우 : 일일평균 단위열사용량(Gcal/㎡) × 대상일수 × 해당 기계실의 난방면적** **일일평균 단위열사용량은 당 아파트 유사조건(난방면적) 기계실(또는 인근아파트 유사조건(난방면적) 기계실)의 조정대상 기간 동안의 실사용량 ÷ 해당 기계실 난방면적 ÷ 해당 사용일수**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1조(요금의 납부의무 등) ① ~ ⑥ (생략) ⑦사용자가 요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다음월의 납부일(이하 “연체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 납부하지 않은 요금 × 2% × (미납일수 ÷ 연체기간의 일수) 단, 제23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열공급정지가 유예된 사용자는 열공급정지 유예확정 월부터 완납일 까지 미납원금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연체료(이하 “유예연체료”라 합니다)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예연체료 = 미납원금 총액× 0.5%× (미납일수 / 해당월의 일수) 미납원금 총액 : 연체료(2%)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미납원금의 총액 유예연체료 최초 부과 월 : 유예확정 익월 유예연체료 계산 기간 : 유예확정 월 직전 납부일부터 미납금 총액 납부일 까지 ⑧ ~ ⑫ (생략)	제61조(요금의 납부의무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사용자는** 요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일(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의 휴일인 경우에는 최초로 도래하는 금융기관 영업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납부하지 아니한 요금과 다음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연체료”라 합니다)을 다음월의 납부일(이하 “연체납부일”이라 합니다)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체료 = 납부하지 않은 요금 × 2% × (미납일수 ÷ 연체기간의 일수) 단, 제23조 제1항 제 4호의 규정에 의거 열공급정지가 유예된 사용자는 열공급정지 유예확정 월부터 완납일 까지 미납원금 총액의 0.5%에 해당하는 연체료(이하 “유예연체료”라 합니다)를 매월 추가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유예연체료 = 미납원금 총액× 0.5%× (미납일수 / 해당월의 일수) 미납원금 총액 : 연체료(2%)가 부과된 사실이 있는 미납원금의 총액 유예연체료 최초 부과 월 : 유예확정 익월 유예연체료 계산 기간 : 유예확정 월 직전 납부일부터 미납금 총액 납부일 까지 ⑧ ~ ⑫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4조(기본요금의 정산) ①사용자는 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64조(기본요금의 정산) ① **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사업자는 면적정산 안내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건축물대장이 작성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사용자 서류제출 1개월 이내 다음 각호 1과 같이 계약면적을 확정합니다.** **1. 전용면적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 **2. 공용면적 :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해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승인 통보한 열이 공급되는 면적** **3. 발코니 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제3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산정하여 제출한 세대 발코니면적 합계**

현 행	개 정
②사업자는 사용자 서류제출 1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1의 건축물에 대한 계약면적 또는 연결열부하를 확정합니다. 1. 신축 주택용 건축물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대장 등의 세대별 전용면적의 합계와 공용면적 중 지역난방열을 사용하는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및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를 모두 합산한 면적 2. 주택용 이외 건축물 : 열공급개시전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연결열부하(온수냉난방 - 동계연결열부하, 냉수냉방 - 냉수연결열부하)	**②주택용 이외 건축물의 계약용량은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용자에게 최종 승인 통보된 열교환기용량 또는 냉동기용량을 열공급개시 이후 확인하여 확정합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면적 또는 연결열부하가 열수급계약 체결당시에 비하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하고, 기본요금에 대한 정산을 합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따라 계약면적 또는 계약용량이 열수급계약체결 당시에 비해 차이가 있을 경우 기본요금을 정산하고 열수급계약서의 내용을 정정합니다.**

현 행	개 정
④ ~ ⑦ (생략) ⑧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시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1. 전용면적 건축물대장 상의 세대 전용면적의 합계 2. 공용면적 중 열공급이 되는 시설면적 건축물대장상 열공급이 되는 시설의 건축연면적의 합계 또는 사업자가 사용자 입회하에 현장실사 또는 실측을 통하여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확인한 면적의 합계 3. 세대 발코니 확장면적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와 냉방 열사용시설기준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제출한 설계도서 또는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까지 최종적으로 제출한 서류상의 세대 발코니 난방면적의 합계기준)	④ ~ ⑦ (현행과 같음) **⑧신축 주택용 건축물의 경우 사용자가 사업자로부터 면적 정산 안내를 받고 1개월 이내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제출을 지연하거나 미제출시에 사업자는 제42조에 따라 산정한 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계약면적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현 행	개 정
⑨사용자가 열공급개시이후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정산한 계약면적 중 세대 발코니 면적의 합계에 한하여 전용면적이외에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상의 면적의 합계와 실제 열공급이 되는 면적의 합계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열공급개시일로부터 기본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⑨사용자가 제1항 규정에 따라 정산한 계약면적과 실제 열공급이 되는 면적합계의 차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사업자는 사용자 입회하에 현장실사 또는 실측을 통하여 면적을 확정하며 이 경우 열공급개시일로부터 기본요금을 정산합니다.**
⑩기본요금중 계약용량은 사용자기계실 준공후 열교환기용량을 확인하여 정산합니다. 이 경우 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⑩ <삭제>**
⑪기본요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청구권과 추가납부의무는 다른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당해 건축물의 처분, 관리업무의 인계 등과 함께 이전됩니다.	⑪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제64조의2(선수금) 사업자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6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로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제64조의2(선수금) 사업자는 사용자의 희망에 따라 장래 요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선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선수금에 대하여는 **제65조제5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로 다음과 같이 이자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자 = 선수금 × 이자율 × 선수금적용일수** **선수금적용일수는 선수금 입금일 익일 부터 최초 도래하는 열요금 납부일까지의 기간** **다만, 사용자가 최초 도래하는 열요금 납부일 이전에 열요금을 납부한 경우 실제납부한 날까지의 기간**
제75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 ② (생략)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실없이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 이상의 중앙일간지 또는 사용자의 공급구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75조(영업의 양도 등의 통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사업자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최소 30일 이상 게시하고, 서면·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과실없이 사용자의 연락처를 알지 못하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통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두개 이상의 중앙일간지** 또는 사용자의 공급구역을 보급구역으로 하는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현 행

(별표1)

계약종별 분류표

열매체	계약종별	적 용 대 상
온 수	주 택 용	○ 공동주택 및 공고지역내 단독주택 <개정 2008.10.21>
	업 무 용	○ 주택용 또는 공공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공 공 용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외국인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기타 공공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 경우

주 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된 시설의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부속시설 중 주된 교육시설과 연관성이 없는 시설(법인체사무실 등), 사택(기숙사 제외) 및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영리시설 등은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공시설에 경제적 이익 또는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이 해당 기관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됩니다)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6.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개 정

(별표1)

계약종별 분류표

열매체	계약종별	적 용 대 상
온 수	주 택 용	○ 공동주택 및 공고지역내 단독주택 <개정 2008.10.21>
	업 무 용	○ 주택용 또는 공공용에 해당하는 건축물이외의 건축물
	공 공 용	○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외국공관 ○ 학교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특수학교.외국인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 의료시설 -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보건의료원과 보건지소를 포함), 대학설립.운영규정에 의한 부속병원 ○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기타 공공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법률.조례에 따라 설치하여 소유 및 운영하는 시설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비영리법인.비영리단체에 위탁한 경우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시설을 법률 또는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 경우

주 1. 계약종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해석과 결정은 사업자가 합니다.
2. 건축물의 용도별 구분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을 준용하여 사업자가 하며, 복합용도 건축물의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각각 구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 부속시설(부대시설, 복리시설 등을 포함합니다)에 대한 계약종별은 주된 시설의 계약종별을 적용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4. 학교 부속시설 중 주된 교육시설과 연관성이 없는 시설(법인체사무실 등), 사택(기숙사 제외) 및 학생이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영리시설 등은 계약종별을 달리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기타 공공시설에 경제적 이익 또는 수익이 발생되고 그 수익이 해당 기관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동 부분이 구분될 경우에는 구분되는 부분만이 해당됩니다) 업무용으로 계약종별을 정합니다.
6. 명시되어 있지 않은 건축물에 대한 계약종별의 적용은 위의 분류를 기준으로 사업자가 결정합니다.

현 행

(별지 제1-1호 서식)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사업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시공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공동주택	전용면적	㎡	동 수				
		세대수(호)		기계실수				
	부대.복리시설	시설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기 타		
		건축허가연면적	㎡	㎡	㎡	㎡		
		열공급면적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열배관분배관설치공사 착공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인)

신청자(사업시공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8.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부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열배관분배관 설치공사 착공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개 정

(별지 제1-1호 서식)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열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사업주체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시공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공동주택	전용면적	㎡	**세대발코니 확장면적**	㎡			
		세대수(호)		기계실수		동수		
	부대.복리시설	시설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편익시설	기 타		
		건축허가연면적	㎡	㎡	㎡	㎡		
		열공급면적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 예정일**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사업주체) (인)

신청자(사업시공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주1)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서
2.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서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서와 기본설계도서
3.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4. 법인등기부등본 등 사업주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6. 입주자모집공고문(분양 팸플릿 포함)
7.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8.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주2) 열공급규정 제42조에 의거 공사비부담금은 열공급개시일 이후에는 정산하지 않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전용 및 공용면적 : 사용자가 최종 제출한 설계도서를 사업자가 검토하여 승인 통보한 열공급이 되는 면적으로 정산 완료
2. 발코니면적 :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60일** 이전에 사용자가 제출한 열이 공급되는 발코니 합산면적을 계산한 서류를 근거로 정산 완료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현 행

(별지 제1-2호 서식)

(기존공동주택용)

열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주 소							
	성 명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택관리업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공동주택	전용면적	㎡	동수				
		세대수(호)		기계실수				
	부대. 복리시설	시설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근린생활시설	기타		
		건축허가연면적	㎡	㎡	㎡	㎡		
		열공급면적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2.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개 정

(별지 제1-2호 서식)

(기존공동주택용)

열사용신청서								처리기간 14일
※사용자번호		※공급열매체		※계약종별		※접수일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입주자대표회의	주 소							
	성 명		고유번호		전화번호			
(주택관리업자)	주 소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건축물 현 황	공동주택	전용면적		**세대발코니 확장면적**	㎡			
		세대수(호)		기계실수		동수		
	부대. 복리 시설	시설명	관리사무소	경로당	**주민편익시설**	기타		
		건축허가연면적	㎡	㎡	㎡	㎡		
		열공급면적	㎡	㎡	㎡	㎡		
열공급개시요청일			※열공급개시예정일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귀사에 열사용을 신청합니다.

1.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귀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2. 신청인은 열사용신청 및 열수급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구비서류를 적기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신청인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비부담금을 납부하겠으며, 납부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체료를 부담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입주자대표회의 (인)

신청자 (주택관리업자) (인)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귀하

주)제2항의 규정에 따른 열사용신청시 구비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서
2. 집합건축물대장,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자가 작성 또는 확인한 부대.복리시설중 열공급이 되는 면적을 계산한 서류
3.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리주체(주택관리업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입증서류
4. 사업자등록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인감계(인감증명서 제출시)
5. 열사용신청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결의서, 입주자동의서
6. 열사용시설기준에 의한 설계도서
7. 기타 사업자가 열사용신청 안내시 제출을 요청하는 서류

※란은 사업자가 기재합니다.

현 행

(별지 제5-1호 서식)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앞면)

열수급계약서

제 호

사용자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사업주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업시공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공급열매체	□온수, □냉수		열사용용도	□난방.급탕용, □냉방용	
기계실수			열공급개시예정일		
계약면적			계약기간		
검침일			요금납부일		
재산한계점			열배관분배관설치공사 착공예정일		

주 요 계 약 내 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이 있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거나, 기타 사용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뒷면 (생략)

개 정

(별지 제5-1호 서식)

(신축공동 및 단독주택용) (앞면)

열수급계약서

제 호

사용자	공동주택명				
	공동주택소재지				
	사업주체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업시공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업자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사용자번호			계약종별		
공급열매체	□온수, □냉수		열사용용도	□난방.급탕용, □냉방용	
기계실수			열공급개시예정일		
계약면적			계약기간		
검침일			요금납부일		
재산한계점			**분배관 설치공사 예정일**		

주 요 계 약 내 용

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열공급규정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2. 이 계약 체결이후 열공급규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합니다.
3. 사용자는 사업주체에 변동이 있거나,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거나, 기타 사용자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동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변동내용을 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4. 열공급규정에 다른 내용이 있거나 별도의 약정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공급규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한계점을 기준으로 시공, 유지 및 관리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5.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기설치된 열공급시설의 교체, 이설 등의 공사를 할 경우,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 있어서 소요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설치 이후 동 시설은 사업자의 소유로 합니다.
6. 사용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8조제1항 및 열공급규정 제5장의 규정에 따라 공사비부담금과 제6장의 규정에 따라 요금, 이자, 연체료, 위약금을 각각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열공급개시예정일 전일까지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에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열공급개시예정일 연기신청일까지의 기간과 열공급규정 제44조제3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 이외의 사유로 최초의 열공급개시예정일로부터 3개월을 초과하여 열공급개시예정일을 연기한 경우에 3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기본요금의 30%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사용자는 열공급개시 이전에 열수급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열공급규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사용자에게 열을 공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뒷면 (현행과 같음)

현 행

(별지 제9호서식) (앞면)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열사용자번호	

신청인 ①	성 명		연락처	자택	) -
				HP	) -
지원 대상 고객 정보 ②	지원 대상자명		지원 대상자 주민번호		
	세대주명	☐ 지원대상과 동일 (체크시 세대주사항 미기재)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주민번호		
	주 소				
	지원 대상 종류 (해당사항 "√"표시)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 독 립 유 공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장 애 인 1~3급 (장애 ___급)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 5.18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 장애인, 국가(5.18)유공자는 장애·상이등급 기재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계층 지원대상은 해당법령에 "√" 표시		
	최초전입일		자격증명 취득일		
입급 계좌 ③	*입금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 없이 입력)

* 입금계좌는 지원금액 지급(환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동 의 사 항

■ **변동사실 통보의무 이행 및 부당요금 추가납부에 대한 동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자로써 위와 같이 주택용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가구수변동·수급제외·입금계좌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신하여 신고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즉시 반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내 사 항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민감정보 수집 동의, 3.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4.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5.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사전 동의, 6.법정대리인 동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기본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정부 행정정보망 열람에 대한 사전동의(신청서 동의란 확인) 시 **제출생략 가능** ***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확인시 증빙서류 제외**
증빙서류	- 다자녀 가구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생계,의료,주거,교육) - 장애인 1,2,3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수당자,한부모가족지원, 본인부담 경감)	

☐ 매년 7~8월경 당해연도의 지원적용기간(전년 3월1일~금년 2월28일, 12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개별계좌로 지원해드립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 정

(별지 제9호서식)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열사용자번호	

지원 대상 고객 정보	지원 대상자명		지원 대상자 주민번호	
			지원 대상자 휴대폰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명	☐ 지원대상과 동일 (체크시 세대주사항 미기재)	세대주 주민번호	
			세대주 휴대폰	
	주 소			
	지원 대상 종류 (해당사항 "√"표시)	☐ 다자녀(3자녀이상) 가구 ☐ 독 립 유 공 자 ☐ 기초생활수급자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장 애 인 1~3급 (장애 ___급) ☐ 국가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 5.18유공자 1~3급 (상이 ___급) * 장애인, 국가(5.18)유공자는 장애·상이등급 기재 ☐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 장애수당자, ☐ 한부모가족지원, ☐ 본인부담 경감)	
입급 계좌	*입금은행	계좌번호 ("-" 없이 입력)	예금 주명	예금주와의관계

* 입금계좌는 지원금액 지급(환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정확히*** 기재 바랍니다.

동 의 사 항

■ **변동사실 통보의무 이행 및 부당요금 추가납부에 대한 동의**

지역난방 에너지 복지요금 지원대상자로써 위와 같이 주택용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을 신청합니다. 또한, **이사.사망.가구수변동·수급제외·입금계좌정보 등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동내용을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자진하여 신고하겠으며, 신고누락으로 부당하게 지원받은 경우 결격사유가 발생된 시점부터 지원금을 소급하여 즉시 반납하는데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안 내 사 항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 제3자 제공 등에 동의하실 경우 전자정부로 열람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합니다.
(1.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2.고유식별정보 수집동의, 3.민감정보 수집 동의, 4.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동의, 5.법정대리인 동의)

구 분	구 비 서 류	비 고
기본서류	- 에너지복지 지원 신청서(인터넷 신청 시 제출 생략)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제3자 제공에 대한 사전동의(신청서 동의란 확인) 시 **제출생략 가능** *** 단, 중복자격 및 사망에 의한 자격확인시 증빙서류 제외**
증빙서류	- 다자녀 가구 : 없음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장애인 1,2,3급 : 복지카드 또는 장애증명서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자활사업참여자, 장애수당자,한부모가족지원, 본인부담 경감)	

☐ 매년 7~8월경 당해연도의 지원적용기간(전년 3월1일~금년 2월28일, 12개월)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개별계좌로 지원해드립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제3자 제공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양식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 행

(뒷면)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행정정보공동이용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지역난방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지역난방 주택용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에너지복지지원금) 지원 신청·해지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대상 확인 및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kdhc.co.kr)에 고지된 수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보유·이용 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번호 처리)

■ **보유·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난방 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5년간 보관합니다.

■ **수집항목**

개인정보	[필수] 신청인·자격대상(세대주) 성명, 주소, 입금은행, 예금주명, 계좌번호 [선택] 연락처, 자격증명 발급일, 최초 전입일
고유 식별번호	신청인·자격대상(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보호자)정보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구 분	개인정보 이용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업무의 위탁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계좌, 감면대상여부	고객콜센타관리운영 위탁 용역사	이용 후 즉시 파기
제3자 제공	성명, 주민번호, 감면대상자격 취득상실여부	안전행정부, 보건복지부	

※ 기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거부의 권리**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 의로 인해 지역난방이용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지역난방에너지복지 지원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 시 □란에 "√"표시)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정보(14세 미만 미성년자)	성 명		인 (서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정보 (보호자 또는 부모님)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전화	( ) -
		휴대폰	
		이메일	@

■ 본 동의서는 미성년자(만14세 미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고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 회사는 귀하(법정대리인)의 자녀(만14세 미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확인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목적을 다한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법정대리인)께서는 미성년자(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 정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전화(1688-2488)를 통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사가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며 파생되는 서비스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1 년 월 일
법정대리인(보호자 또는 부모님) 인(서명)

개 정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제3자 제공 등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한국지역난방는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요금 지원 신청을 위하여「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지역난방 주택용사용자에 대한 요금감면(에너지복지지원금) 지원 신청·해지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에 대한 자격대상 확인 및 지원을 위한 의사소통 경로 확보
- 기타 개인정보처리방침(http://www.kdhc.co.kr)에 고지된 수탁기관에게 서비스 제공 등 지원이행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 **보유·이용 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번호 처리)

■ **보유·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출등 변동으로 인한 지역난방 사용계약 해지 또는 지원자격 상실 후 최장 2년간 보관합니다**

■ **수집항목**

개인정보	[필수] **지원대상자(세대주) 성명, 지원대상자(세대주)휴대폰, 주소,지원대상종류,** 입금은행, 계좌번호,예금주명,예금주와의 관계
고유 식별번호	자원대상자(세대주)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건강정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만14세미만 아동의 법정대리(보호자)정보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등

■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

구 분	개인정보 이용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업무의 위탁	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개인계좌, 감면대상여부	고객콜센타관리운영 위탁 용역사	이용 후 즉시 파기
제3자 제공	성명, 주민번호,감면대상자격 취득상실여부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보훈처**	

※ 기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http://www.kdhc.c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거부의 권리**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기본 정보 이외의 추가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추가 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수집하지 않으며, 미동 의로 인해 지역난방이용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 거부시 지역난방에너지복지 지원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민감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위탁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 시 □란에 "√"표시)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보호자(부모 및 법정대리인) 동의서

신청인 정보(14세 미만 미성년자)	성 명		인 (서명)
	생년월일		
법정대리인 정보 (보호자 또는 부모님)	성 명		
	생년월일		
	신청인과의 관계		
	연락처	전화	( ) -
		휴대폰	

■ 본 동의서는 미성년자(만14세 미만)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제공하고 에너지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귀하(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의 동의서입니다.
■ 회사는 귀하(법정대리인)의 자녀(만14세 미만)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확인을 위해 제공한 개인정보를 회사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용목적을 다한 경우에는 재생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즉시 파기합니다.
■ 귀하(법정대리인)께서는 미성년자(만14세미만)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 등)에 대한 동의 철회, 개인정보의 열람, 오류 정정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표전화(1688-2488)를 통해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귀사가 위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등에 동의하며 파생되는 서비스 이용을 허락합니다.
2. 상기 보호자 본인은 신청인의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한국지역난방공사 개인정보취급방침 및 서비스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법정대리인(보호자 또는 부모님) 인(서명)

현 행

(별지 제9호서식)

(※) 접수번호 및 열사용자코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재합니다.

① **신청인** : 신청인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연락 가능한 유.무선 전화번호를 기재합니다.

② **지원대상 고객정보**
- 지원대상자 : 복지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를 기재합니다.

「복지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으로서 동사무소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또는 "손(孫)"이 **각각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주명과 지원대상자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기재하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지원대상자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입니다.
- 지원대상 종류 : 지원대상자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하시되, 장애인.국가(5.18)유공자는 상이등급을 기재하며, 상이 3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 최초전입일 :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아파트에 최초로 전입한 날짜를 기재하되, 지원자격 증명 발급일이 전입일보다 늦은 경우 증명서 발급일을 기재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셋째자녀 출생 등록일을 기준으로 기재합니다.
(증빙사항 확인을 통하여 최초 전입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③ **입급계좌** : 지원금액 지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되, 증권계좌 및 일부계좌는 불가하오니 조회 후 지원가능 계좌를 기재합니다.
* 계좌정보 오류(해지계좌, 계좌번호 오기, 예금주 상이 등)로 인한 경우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금 지급되지 않을 수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행정정보이용 사전동의· 민감정보처리·법정대리인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이용에 활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만 해당합니다
* 만14세미만의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에너지복지 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입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 정

(별지 제9호서식)

(※) 접수번호 및 열사용자코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기재합니다.

① **신청인** : 신청인은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이어야 하며, **본인인증을 위한 휴대폰번호를 반드시 기재합니다.**

② **지원대상 고객정보**
- 지원대상자 : 복지지원 대상자, 다자녀가구의 세대주를 기재합니다.

「복지지원 대상」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해당자)**
차상위계층	- 자활사업참여자, 차상위장애수당자, 한부모가족지원가정으로서 주민센터 증명서류 발급 대상자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류 발급 대상자

「다자녀가구」
·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가 **3인 이상** 또는 "손(孫)"이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의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와 동일한 주소지에 등재되어있어야 합니다.
** 3자녀 이상 가구는 세대주명과 지원대상자명을 동일하게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가구의 세대주를 기재하며, 세대주와의 관계는 지원대상자와 세대주와의 관계를 기재합니다. 주소는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입니다.
- 지원대상 종류 : 지원대상자가 해당하는 사항에 "√"표시 하시되, 장애인 · 국가(5.18)유공자는 상이등급을 기재하며, 상이 3등급 이상만 신청 가능합니다.
- **지원기간은 공급지역내 거주 및 자격 보유기간으로 산정**, 지원 자격증명 발급일이 전입일 보다 늦은 경우 증명서 발급일을 기재하며, 다자녀가구의 경우는 셋째자녀 출생 등록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최대 12개월치 지급)

③ **입급계좌** : 지원금액 지급 시 필요합니다. 지원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의 계좌를 기재하되, 증권계좌 및 일부계좌는 불가하오니 조회 후 지원가능 계좌를 기재합니다.
* 계좌정보 오류(해지계좌, 계좌번호 오기, 예금주 상이 등)로 인한 경우 지역난방 에너지복지지원금 지급되지 않을 수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고유식별번호·제3자 제공등· 민감정보처리·법정대리인 정보수집 및 이용동의
: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금 지원대상 자격정보 확인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이용에 활용합니다.
* 민감정보 수집 및 처리 동의는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장애인에만 해당합니다
* 만14세미만의 지역난방 에너지복지 지원대상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동의 에너지복지 서비스 가입을 위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가입시 고지한 범위 또는 서비스 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아동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아동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위하여 수집한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현 행	개 정
(별지 제10호 서식) <신설>	(별지 제10호 서식)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한국지역난방공사는 공사비부담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납부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 및 이용목적

- 공사비부담금 카드납부를 위한 제3자 정보 제공

■ 보유·이용 근거

-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공급규정)
-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령 제31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보유·이용 기간

- 수집한 개인정보는 권리의무관계의 확인 등을 위하여 특정 법률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역난방 사용계약 해지 후 최장 5년간 보관합니다.

■ 수집항목 및 제3자 제공

구 분	개인정보 이용항목	제공받는 자	보유기간
제3자 제공	법인명(성명),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공사비부담금 납입금액, 납부기한	신용카드사	계약종료 후 즉시 파기

※ 기타 개인정보 취급에 관한 상세한 사항은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에 공개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동의 거부의 권리

- 한국지역난방공사는 보다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며, 미 동의로 인해 지역난방 이용상의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동의거부 시 공사비부담금의 신용카드(직불카드 포함)납부서비스 적용이 제한됩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고유식별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해당사항 □란에 "√"표시)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현 행	개 정(안)	개 정 사 유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날로부터 시행합니다. ②(경과조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제1항제8호에 의해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017년 2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6조제1항제9호마목(주거급여, 교육급여)은 2016년 3월 1일부터, 아목은 2017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